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5. 1.

발 의 자 : 인재근 · 김성곤 · 김성주
노영민 · 민병두 · 박수현
박완주 · 박주선 · 부좌현
설 훈 · 신경민 · 심재권
안홍준 · 오영식 · 우상호
윤후덕 · 이목희 · 이미경
이인영 · 이학영 · 전순옥
진선미 · 진성준 · 최동익
홍종학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사고 체육관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음.

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,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 107조의2 신설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7조의2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08조제1항 중 “제11조제1항, 제19조, 제47조”를 “제11조제1항, 제47조”로, “대수선 또는 용도변경”을 “대수선”으로 한다.

제110조제1호 중 “제11조제1항, 제19조, 제47조”를 “제11조제1항, 제47조”로, “대수선 또는 용도변경”을 “대수선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제108조(벌칙) ① 도시지역에서 <u>제11조제1항, 제19조, 제47조, 제55조, 제56조, 제58조,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② (생략) 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도시지역 밖에서 <u>제11조제1항, 제19조, 제47조, 제55조, 제56조, 제58조,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</u>	<u>제107조의2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제108조(벌칙) ① ----- <u>제11조제1항, 제47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대수선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1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제11조제1항, 제47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대수선</u>-----

<u>도변경</u> 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사 2. ~ 11. (생 략)	----- ----- 2. ~ 11.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